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34
----------	-----

2023. 10. 18.(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박병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3년 10월 4일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4일

라. 상정일자: 2023년 10월 16일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병천 의원)

가. 제안이유

○ 충북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교육수요 증가와 통합성장을 고려한 문화다양성 이해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 등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용어 정의 정비 (안 제2조제1항)
-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인력 확보’ 사항 추가 (안 제3조제2항)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수행사업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 사항 신설 (안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 띄어쓰기 수정, 불필요한 단어 삭제 등 조문 정비 (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가. 조례 개정이유

- 지난 4월, 정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하에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제4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2023~2027)」을 심의·의결한 바가 있음¹³⁾.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국정과제48 :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실천과제3: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1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3. 4. 관계기관 합동)

- 이번 기본계획은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다문화 한부모가족 및 본국 귀환 다문화가족 등 가구 유형이 다변화되면서 학습·진로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국내 다문화 가구원 수가 112만 명을 넘어섰고 취학 연령대인 만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빠르게 증가¹⁴⁾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도는 낮아지고¹⁵⁾ 학력 격차는 심화¹⁶⁾되는 등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임.
- 충청북도 거주 다문화가정 학생 수도 지난 해 기준 7,425명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전체 학생 수 가운데 다문화 학생 비율이 4.3%로, 총 평균 3.2%¹⁷⁾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북 다문화학생 증가 현황 (2019~2022)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전체	전체	171,598	176,540	175,840	173,975
	다문화	5,503	6,746	7,182	7,425
	비율	3.3%	3.8%	4.1%	4.3%

자료제공 :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에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운영’ 과

14) 만 7~18세 자녀 수: ' 17년 10.7만 여명 → ' 21년 17.5만 여명 (63% 증가)

15) 학교 적응도: ' 15년 4.53점 → ' 18년 4.33점 → ' 21년 4.23점

16)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 18년 18%p → ' 21년 31%p

(' 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5%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 40.5%)

17) 2022년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 5,284,527명 대비 다문화학생 168,645명 : 3.2%

(출처 : 충청북도교육청 2023학년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세부계획)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와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현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아낸 ‘다문화가족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라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방향에 부합함.

-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5항¹⁸⁾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 시책에 법 제4조에서 명시한 실태조사 결과 중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현황과 인식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변화하는 학생들의 교육수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본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안 제2조(정의)**에서는 제1항제2호와 제3호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변경하였음.

- 이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¹⁹⁾를 통해

18)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교육 현황 및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의를 제2호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제외하고,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²⁰에서 ‘~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으로 제한한 ‘외국인주민’의 범위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확대, 정착주기의 차이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다문화가족까지 정의에 포함한 것임.

- 안 제3조(기본계획 수립)에서는 제2항제3호에 교육감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중 ‘재원확보 사항’을 ‘재원 및 인력확보 사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다문화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에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위원회 설치)에서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을 ‘~사람 중에서’로 변경해, 교육감이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해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제정되어 있는 타 시·도 교육청의 해당 조례 중 유사 조항에 위원 임명 및 위촉과 관련해 13개 교육청*이 ‘~ 사람 중에서’로 규정하고 있음.

* 13개 시·도교육청 :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제주, 충남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을 규정한 안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에서는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 사항을 신설함.
-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경우,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부모국에 대한 언어교육과 함께 역사·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부모국 방문 등 문화 교류프로그램부터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다문화교육 전시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정체성 확립과 부모-자녀 간 관계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우울감과 자아존중감 하락²¹⁾ 등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전달체계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각급 학교 및 교육부 지원체계	청소년 등 기타 지원체계
성장단계	양육 및 성장	교육 및 학교적응	각종 자원 연계
중·고등학생 진로탐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중언어 교육·인재DB 연계 •청소년 진로컨설팅·상담 강화 •대학생 멘토링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체험 정보제공(꿈길) 및 진로교육(진로탄탄) •청소년기 심리상담 강화 (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원 등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및 다문화 교육 근거 마련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수련시설 등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강화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 확대 •다문화 청소년 중심 진로체험처 발굴·확대 •폴리텍 다문화고등학교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를 통한 위기 청소년 지원

- 특히, 세종과 전남교육청 등에서는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방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²²⁾, 부모국의 역사·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현지

21) 우울감 경험: '18년 18.8% → '21년 19.1% / 자아존중감: '18년 3.87점 → '21년 3.63점

학생들과 문화교류를 통해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향상은 물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²³⁾’의 경우,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주배경학생(외국인, 국내출생, 중도입국 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통해, 다문화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학 진학을 포기²⁴⁾하지 않도록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지원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음.

<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 계획 (23.9.26.,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

○ (밀집학교 여건개선) 다문화 밀집학교(전체학생 중 이주배경학생 30%이상) 대상으로 **한국어 학급 등 인프라 확충을 집중지원**(‘24년~)

구분	한국어학급	지원인력 등	방과후과정
일반학교	필요시 설치 권장	-	-
다문화 밀집학교	설치 적극지원	한국어학급당 1명 배치지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지원

○ (지역 내 다문화교육정책 허브 구축) 교육지원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자원과 학교 간 **매칭, 학부모교육, 학습자료** 등 지원

*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부터 우선설치 추진(‘24년, 5개 시범운영)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신설을 통해서 현재 **충북 도내 다문화 가족 학생 밀집학교 2개교**²⁵⁾에 대한 한국어위탁교육, 다문화 맞춤형 강사 지원, 정서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 강화를

22) - 세종교육청 : ‘다문화학생 부모나라 방문 프로젝트’ (23.7.17~21., 베트남, 학생 20명 참여)
 - 전남교육청 : ‘조부모나라 방문 프로젝트’ (23.8.7.~11., 일본 / 베트남, 학생 각 15명 / 20명 참여)

23) **다문화 밀집학교(교육부 기준)** : 재학생 100명 이상 전체 학생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

24) ’21학년도 다문화가족 학생 학업중단률 : **초 0.68 / 중 0.78 / 고 2.05** (전체학생 초 0.58 / 중 0.54 / 고 1.55)
 ’21학년도 다문화가족 학생 대학진학률 : **40.5%** (전체학생 대학진학률 : 71.5%)

25) 전국 71개 학교 중 **충북 도내 2개 학교 포함** (청주 1개교, 진천 1개교)

비롯해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

□ 다문화 밀집학교* 현황

* 재학생 100명 이상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

					(단위: 개교)
연도	90% 이상	70% 이상 90% 미만	50% 이상 70% 미만	30% 이상 50% 미만	합계
'22년	1	6	9	55	71
'21년	1	5	7	42	55
'20년	1	5	6	33	45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안 제15조(실태조사)와 제16조(협력체계 구축)도 신설해, 도내 다문화 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업 및 학교생활에 대한 지원뿐 만 아니라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대학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노력을 명시함.
- 이밖에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이 ‘해마다 연초에 필요한’ 기본 계획 수립하도록 하던 표현을 ‘매년’으로 변경하고, 제4조제1항 조문 내용 중 ‘교육 지원’을 ‘교육지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위원회’ 약칭 표현을 명시해, 이후 조항에서 10회 정도 반복 사용되는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를 간결하게 표현하도록 함.
- 이어 제5조에서도 ‘~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표현을 ‘~ 다음’으로 간결화하였고, 제7조제1항에서는 ‘연1회’와 ‘3분의 1

이상' 을 '연 1회' 와 '3분의 1 이상' 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충북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수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다문화가족 밀집학교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는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통해 사회 통합과 미래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할 것임.
- 특히, 다문화가족 학생 부모국 방문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인 해외 체험·문화교류 프로그램 등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과 추진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문 내 불필요한 수식어를 삭제하고 띄어쓰기를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등 국어 어문규범에 부합하도록 변경함. 또한,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제1항 중 “해마다 연초에 필요한”을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다문화교육 시책”을 “다문화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원확보”를 “재원 및 인력확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 지원”을 “교육지원”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위원회””를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을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운영
5.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

제14조 중 “진흥”을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 대학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생 략)</p> <p>2. 「<u>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u>」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p> <p>3. 「<u>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u>」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p> <p>② (생 략)</p> <p>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u>해마다 연초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u>다문화교육 시책의 기본 방향</u></p> <p>2. (생 략)</p> <p>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u>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u></p> <p>4. ~ 6. (생 략)</p> <p>제4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u>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u></p>	<p>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p> <p>2. 「<u>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u>」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p> <p>3. <u>그 밖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 ----- ----- ----- <u>매년</u> ----- -----.</p> <p>② ----- -----.</p> <p>1. <u>다문화교육</u>----- ---</p> <p>2. (현행과 같음)</p> <p>3. ----- <u>재원 및 인력확보</u>---</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회 설치) ① ----- ----- ---- <u>교육지원</u>-----</p>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6. (생략)

④ ~ ⑥ (생략)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문
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생략)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생략)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행한다.

1. ~ 3. (생략)

<신설>

-----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람 중에서 -----

1.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기능) -----
다음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 연 1
회 -----

1 이상-----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신 설>

4.·5. (생 략)

③ (생 략)

제14조(예산)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
흥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5조 (생 략)

이해 프로그램 개발·운영

5.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

6.·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예산) -----
--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

제15조(실태조사) ①교육감은 다
문화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
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
북도, 지역 대학 등 관계기관·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
여야한다.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약칭: 외국인처우법)

[시행 2023. 7. 19.] [대통령령 제19355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 개요

- 다문화가족 학생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밀집학교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매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발생

3. 관련 조문

-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안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운영
5.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 산출내역의 단가는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운영비·자산취득비의 기준단가로 하며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및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지원을 위한 강사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추계함.

※ 향후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운영 수는 증감될 수 있음

나. 추계 결과

-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4년 800,00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4,10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연도별 비용 추가 소요 예산 >

(단위 : 천원)

사업명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 운영	600,000	100,000	100,000	100,000	150,000	150,000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	3,5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다. 추계비용의 상세 내역

-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수행사업 (안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1)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 운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문화 교류프로그램, 다문화교육 전시체험관 등)

- 소요예산(안): 100,000천원 ('27년 이후 150,000천원)

· 인 건 비	60,000천원	※ 30,000원×20명×100시간
· 운 영 비	40,000천원	(교재, 차량임차료, 학습용품, 급량비 등)
· 추가예산	50,000천원	(2027년 이후 부모국 이해교육 추가 프로그램 운영 비용)

2) 다문화가족학생 밀집학교* 지원(한국어위탁교육, 다문화 맞춤형 강사 지원, 정서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

* **밀집학교(교육부기준)**: 재학생 100명 이상 전체 학생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 [충북 2교]

⇒ 동 조례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학생 50명 이상 학교**를 포함하여, 다문화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학교 등을 지원

** **대상학교(다문화학생 수): 15교(1,219명)** ※ 2022. 4월 1일 기준

- 소요예산(안): 700,000천원

- 인건비 600,000천원 ※ 30,000원×20명×50시간×20회
- 운영비 100,000천원(교재, 차량임차료, 학습용품, 급량비 등)